

저작권 질 의 회 신

저작권 Q&A 답변서

AI를 이용한 이미지 재가공과 저작권 침해 여부

작성일	2026. 8. 6. (copyright-qa 스킴 v1.6)
판단 기준 시점	2026년 8월 현재의 법령·판례·한국저작권위원회 공식 자료
중심 해설 자료	한국저작권위원회 AI 안내서 4종·상담사례100+ (비구속 공식 해설) — 본문 링크는 전건 접속 검증(2026-08-06)
법적 성격	일반적인 정보 제공 자료 (법률 자문 아님 — 말미 고지 참조)

질 의 "저작권이 있는 이미지를 AI를 이용해서 재가공했을 때 저작권 위반인가요?"

I. 결론

이 답변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공식 안내서 4종과 상담사례100+를 서술의 중심에 두고, 법령과 판례로 뒷받침했습니다. 위원회 안내서·상담사례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공식 해설 자료이며, 규범적 근거는 법령·판례이고 침해 여부의 최종 판단은 법원의 몫입니다.

조건부입니다. AI를 썼다는 사실 자체는 결론을 바꾸지 않습니다 — 위원회 안내서의 판단 틀에서도 AI는 도구일 뿐이고, 침해 여부는 사람이 손으로 재가공했을 때와 같은 기준(의거성·실질적 유사성)으로 판단합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① 결과물에 원본 이미지의 보호되는 창작적 표현이 남아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는가, ② 원본에 의거해 만들었는가(원본 파일을 AI에 직접 입력하는 재가공은 의거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다만 결과물별 표현 비교는 별도로 필요합니다)). 표현이 남아 있는 결과물을 허락 없이 만들면 복제 또는 2차적저작물 작성의 침해가 되고, 온라인에 게시하면 공중송신 침해가 더해집니다.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는 네 가지입니다. ① 로컬 환경에서 비공개 개인 감상 범위에 머무는 경우 — 사적복제(저작권법 제30조)로 면책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원본을 클라우드 AI 서비스에 업로드하는 방식이라면 사업자 서버 복제·약관상 학습 이용·국외 이전 문제가 별도로 생길 수 있어 "개인 이용이니 면책"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서비스 약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② 원본의 보호되는 창작적 표현과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스타일·아이디어만 차용한 때가 이에 해당하며, 추상적 화풍·아이디어만 차용하고 보호되는 구체적 표현이 남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다만 부정경쟁·계약 위반·플랫폼 정책 등 저작권 외 쟁점은 별도로 남을 수 있습니다). ③ 라이선스·이용허락 범위 내인 경우. ④ 저작권법 제35조의5 공정이용에 해당하는 경우 — 다만

공정이용 여부는 네 요소와 이용의 구체적 경위를 종합해 사안별로 판단되므로, 이 정보만으로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1. 판단은 네 단계로 나뉘서

AI 이용은 단계마다 문제되는 권리와 예외가 다릅니다. 아래 네 단계를 구분해야 정확한 판단이 됩니다.

단계	문제되는 권리·확인 사항
① 입력	원본 이미지의 복제(업로드·저장), 로컬 처리인지 클라우드 전송인지, 원본을 적법하게 확보했는지.
② 서비스 처리	사업자 서버의 저장·보존, 약관상 입력물의 학습 이용 여부, 국외 이전 — 서비스 약관과 개인정보·계약 쟁점 병존.
③ 결과물 생성	의거성 + 원본의 보호되는 창작적 표현과의 실질적 유사성. 2차적저작물작성권·동일성유지권 검토.
④ 외부 이용	게시·판매·광고·출판에 따른 공중송신·배포·복제와 시장 대체 효과 — 침해 위험이 가장 커지는 단계.

2. 이 결론의 도출 근거

서술 중심은 위원회 공식 자료이고, 규범적 근거는 법령·판례입니다. 위원회 자료는 문서 전체가 아니라 해당 장·페이지(PDF 기준)를 특정했으며, 각 부분의 내용은 Ⅱ장·Ⅲ장에 있습니다.

결론의 판단	실무 해설 — 위원회 공식 자료(비구속)	규범 근거 — 법령·판례
AI를 써도 판단 기준은 동일(도구론)	분쟁 예방 안내서 제5장 p.33~36	대법원 2013다8984
원본 표현이 남으면 복제·2차적저작물작성 침해	분쟁 예방 안내서 제4장 p.29 + AI 저작권 안내서 p.32	저작권법 제16조·제22조·제5조 제2항
온라인 게시 시 침해가 더해짐	AI 저작권 안내서 제4장 p.31 + 분쟁 예방 안내서 p.46	저작권법 제18조
변형·패러디도 원칙은 권리자 허락	상당사례 '강남스타일 패러디 UCC'	저작권법 제13조 + 대법원 2010다79923
화풍·아이디어만 남으면 침해 불성립	분쟁 예방 안내서 제5장 p.34~35·Q1 p.59	대법원 99다10813·98다43366
로컬·비공개 이용은 면책 여지(클라우드는 별도 검토)	상당사례 '개인적 이용을 위한 복제' + 분쟁 예방 안내서 p.46	저작권법 제30조

결론의 판단	실무 해설 — 위원회 공식 자료(비구속)	규범 근거 — 법령·판례
공정이용은 사안별 종합 판단(단정 불가)	공정이용 안내서 Ⅲ장 p.26~28 + 상당사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저작권법 제35조의5 + 대법원 2021다272001

II.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식 자료로 본 판단 (비구속 실무 해설)

아래 7건이 이 답변의 서술 중심입니다. 각 항목은 문서 전체가 아니라 이 질문에 해당하는 장·절과 페이지를 특정해, 그 부분의 내용만 안내합니다(페이지는 표지를 포함한 PDF 기준 — 내지 인쇄 쪽번호와 1쪽 안팎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내용은 2026-08-06 위원회 누리집에서 내려받은 원문에서 직접 확인했으며, 안내서 4종은 위원회가 [\[AI-저작권 안내서\(4종\) 모음\]\(2026. 4. 30. 공지\)](#)으로 묶어 제공하는 현행판과 동일합니다.

①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 (국·영문, 2023. 12. 발행 · 2024. 1. 16. 등록, 108면)

제4장 「AI 이용자에 대한 안내사항」 中 01 저작권 침해에 유의 — PDF p.30~33 (이 질문의 직접 근거는 p.31~32)

이용자는 프롬프트 등으로 입력하는 텍스트·이미지 데이터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특히 기존 저작물과 같거나 유사한 산출물을 공연·전시·배포·공중송신 등 외부 공표 방식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라고 안내합니다(p.31). 나아가 "저작권 있는 이미지를 무단 입력해 자사 제품용으로 수정한 뒤 홈페이지에 사용"하는 행위를 침해 예시로 직접 들고 있어(p.32) — 상업적 외부 이용을 전제로 한 유사한 대표 사례가 안내서에 직접 예시되어 있는 셈입니다. 침해 시 민사 배상 외에 형사 처벌(저작권재산권 침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까지 가능성도 같은 절에 있습니다(p.31).

②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에 의한 저작권 분쟁 예방 안내서 (2025. 6., 62면)

제5장 「침해 판단 고려 요소」 PDF p.33~36 + 제7장 「이용자에 대한 안내 사항」 PDF p.45~46

침해는 의거성과 실질적 유사성으로 판단하는데, 원본 저작물을 직접 입력하는 등 이용자가 특정 저작물을 인식한 경우를 침해 위험이 가장 높은 시나리오로 분류합니다(p.35). 프롬프트에 특정 저작물을 입력하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결과물이 기존 저작물과 동일·유사한 경우"에 침해가 성립하며(p.45), 개인적으로 생성하는 행위는 침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나 외부 공개·공유 시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p.46). 본 답변의 "결론이 갈리는 네 가지 경우"와 4단계 구분은 이 판단 틀을 따른 것입니다.

③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 (2025. 6., 50면)

제2장 「인간 창작자의 창작적 기여 여부 판단」 PDF p.13~19 (이 질문의 직접 근거는 p.14·p.18)

재가공물이 저작물로 인정·등록되려면 표현을 주도하는 통제가능성과 의도대로 나타나는 예측가능성을 갖춘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필요합니다(p.14). 오타자 교정·크기 조정·단순 색상 변경 같은 "사소한 변경"만으로는 등록이 불가능하고, 실제로 위원회는 GAI 이미지 2개를 합성한 뒤 단순 후보정·리터치만 한 신청을 거절했습니다(2024)(p.18). 즉 AI 재가공물은 타인 권리를 침해할 위험은 지면서,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확인되지 않는 부분은 정작 보호받기 어려운 이중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④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 (2026. 2. 26., 81면)

III 장 「공정이용 해설」 中 규정 개요·종합 판단 원칙 — PDF p.26~28

공정이용(저작권법 제35조의5)은 제1항 요건과 제2항 4요소를 종합 판단하며, 어느 한 요소가 절대적이지 않고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272001 판결에 따라 이용의 경위·방법처럼 열거되지 않은 사항도 고려할 수 있다고 해설합니다(p.28). 또한 "공정이용 해당 여부는 법원이 최종 판단하기 전에는 확정적이지 않다"고 명시해(p.3), "AI로 재가공했으니 공정이용"이라는 단정이 불가능함을 뒷받칩니다. 이 안내서의 본래 대상은 학습 단계이고 결과물 침해는 ②번 안내서 소관이므로(p.9), 여기서는 공정이용 판단 틀만 참조합니다.

⑤ 상담사례100+ 「개인적 이용을 위한 복제」

대분류 '저작권재산권의 제한' 소재 개별 사례 — 링크가 질문·답변 전문으로 연결

다운로드한 이미지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사안에 대한 위원회 답변입니다. 사적복제(비영리·개인 또는 가정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의 취지를 설명하면서도, 디지털 복제기술 환경에서 이 조항을 지나치게 폭넓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혼자 감상·보관하는 수준이면 면책 여지가 있지만 공유하는 순간 범위를 벗어난다는 것이 이 사례의 내용입니다. 클라우드 AI 업로드 시 사업자 서버 복제·약관·국외 이전을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는 부분은 이 사례가 직접 다루는 내용이 아니라, 제30조의 문언과 서비스 구조에 비추어 이 답변의 추가 분석입니다.

⑥ 상담사례100+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Fair Use)」

대분류 '저작권재산권의 제한' 소재 개별 사례 — 링크가 질문·답변 전문으로 연결

공익 UCC에 음악·사진을 쓰는 사안에 대한 위원회 답변으로, 공정이용 일반조항(현행 저작권법 제35조의5, 사례 작성 당시 조문번호는 제35조의3)의 도입 취지와 함께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범위"라는 한계를 설명합니다. "AI로 재가공했으니 공정이용"이라는 단정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 ④에 대응합니다.

⑦ 상담사례100+ 「'강남스타일' 패러디 UCC와 저작권」

대분류 '저작권재산권의 제한' 소재 개별 사례 — 링크가 질문·답변 전문으로 연결

뮤직비디오를 패러디한 UCC 제작 사안에 대한 위원회 답변입니다. 패러디에는 원저작물의 복제·변형이 반드시 수반되므로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하고, 패러디 명문 규정은 없으며 비평·풍자로 새로운 창작적 노력이 부가된 경우에 한해 인용 등으로 허용될 여지가 있다고 안내합니다. "변형했으니 새 작품"이라는 항변이 원칙적으로 통하지 않는다는 이 답변의 기본 구조와 같습니다.

Ⅲ. 규범적 판단 근거 — 관련 법령·판례

법적 판단의 규범적 기초입니다 — 위 위원회 자료는 이를 설명하는 비구속 해설입니다. 조문·판례 표기를 클릭하면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저작권법 조문은 2026-08-06 조희 — 미리 최신 판(법률 제21595호, 2026. 10. 29. 시행 예정 개정 포함) 기준이며, 본 문서의 인용 조문 전부가 직전 판과 문언 동일(시행 예정 개정과 무관)함을 대조 확인했습니다.

1. 관련 법령 (저작권법)

조문	요지와 이 사안에서의 역할
제5조 (2차적저작물)	재가공물이 독자적 저작물이 되어도 원저작자의 권리에는 영향이 없음(제2항) — "새 창작물" 항변 차단
제13조 (동일성유지권)	이용허락과 별개로, 저작자의 뜻에 반한 변형은 인격권 침해가 될 수 있음
제16조 (복제권)	원본을 AI에 입력하는 단계부터 복제가 발생 — 재가공 과정 자체가 사정거리
제18조 (공중송신권)	결과물을 온라인에 게시하면 별도의 침해가 더해짐
제22조 (2차적저작물작성권)	원본 표현이 남은 변형물의 작성·이용은 원저작자의 독점 권리
제30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비공개 개인·가정 범위의 면책 — 공유·게시 시 종료, 클라우드 업로드는 사업자 서버 복제가 개입해 단정 불가
제35조의5 (공정한 이용)	4요소(목적·종류·비중·시장 영향) 종합 판단 — 현행 판단 기준은 2021다272001

2. 관련 판례 (대법원)

판례	요지와 이 사안에서의 역할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8984 판결	침해 요건인 의거관계의 판단 방법(접근가능성·현저한 유사성) — AI 재가공은 의거 인정 가능성이 매우 높아 승부처는 실질적 유사성

판례	요지와 이 사안에서의 역할
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다10813 판결	아이디어·전형적 요소는 비보호 — 화풍 모방만으로는 침해 불성립(까레이스키 사건)
대법원 2001. 5. 8. 선고 98다43366 판결	사진의 보호 표현은 구도·광량 조절 등 개성적 요소 — 원본이 사진일 때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0다79923 판결	동일의 범위 내의 변경만 동일성유지권 면책 — "AI 변형까지 동의했는지"는 별개 문제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272001 판결	현행 공정이용(구 제35조의3 = 현행 제35조의5)의 판단 기준 — 4요소 외에 이용의 경위·방법 등도 고려 가능

IV. 해외 참고 (비교법 자료)

아래는 외국 법제의 판단으로 한국 법원을 구속하지 않으며, 비교법적 참고로만 인용합니다. AI 소송 현황은 2026-08 기준이며, 진행 중 사건은 상태가 바뀔 수 있습니다.

[Andy Warhol Foundation v. Goldsmith, 598 U.S. 508 \(2023\) — 미국 저작권청 판례 요약\(PDF\)](#)

사진을 실크스크린 초상으로 재가공한 사안에서 미 연방대법원은 이용 목적이 원본과 실질적으로 같으면(잡지 게재 라이선스) 예술적 변형이 있어도 공정이용 판단에 불리하다고 봤습니다. 해당 사안(원본과 같은 잡지 게재 라이선스 목적)의 제1요소 판단에서 예술적 변형만으로는 유리하지 않다고 본 확정 판결로, 이미지 재가공 사안의 대표 사례입니다. 다만 한 사건의 판단이므로 미국 전체의 일반 경향으로 확대해 원용하지는 않습니다.

[Andersen v. Stability AI — 한국저작권위원회 이슈리포트 2023-15 「소송 분석」\(이대희\)](#)

아티스트들이 이미지 생성 AI 개발사를 상대로 제기한 미국 집단소송의 쟁점(학습 데이터 복제, 산출물 유사성 등)을 위원회가 분석한 개별 보고서입니다. 소송은 2026-08 기준 계속 중이며 확정 판결이 아니므로, 이 사안에는 "미국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은 쟁점"이라는 한도에서만 참고합니다.

[미국 저작권청 AI 정책 페이지 \(Copyright and Artificial Intelligence\)](#)

AI 산출물의 저작물성(인간 저작자 요건 — Thaler v. Perlmutter: D.C. Cir. 2025 판결, 연방대법원 2026. 3. 상고(certiorari) 기각으로 확정)과 학습 데이터 쟁점에 관한 공식 보고서·등록 정책이 모여 있는 페이지입니다.

[베이징인터넷법원 AI 산출물 저작권 인정 — 위원회 저작권동향 2023년 제11호\(백지연\)](#)

프롬프트를 반복 수정·선택한 인간의 기여를 인정해 AI 생성 이미지의 저작물성을 인정한 중국 판결(2023. 11.)을 소개하는 위원회의 개별 게시물입니다. 미국(인간 저작자 요건으로 부정)과 반대 방향으로, 국가별로 결론이 갈린다는 사실 자체가 이 영역의 핵심 유의점입니다.

V. 실무 유의사항

분쟁 예방 안내서 제7장(이용자에 대한 안내 사항)의 예방 수칙과 같은 취지입니다.

- "몇 % 변형하면 안전" 같은 기준은 없습니다. 변형률이 아니라 "원본의 보호되는 창작적 표현이 남아 실질적으로 유사한가"로 판단됩니다.
- 공개·상업 이용 전에 원본과 결과물을 나란히 놓고 제3자의 눈으로 유사성을 점검하고, 생성 과정(프롬프트·설정·중간본)을 보존하세요.
- 클라우드 AI 서비스를 쓸 때는 입력물의 저장·학습 이용·국외 이전과 결과물의 권리 귀속·상업 이용 조건을 약관에서 확인하세요. 로컬 처리와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가장 안전한 순서는 이용허락 요청 → 라이선스 구매 → 공공저작물·CCL 소재로 대체이며, 그래도 불확실하면 이용을 보류하는 것입니다.
- 침해가 인정되면 민사 책임(침해정지·손해배상 청구)과 형사 책임(원칙 친고죄)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확인되지 않는 AI 산출 부분은 저작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 재가공물에 대한 자신의 권리도 기대보다 약할 수 있습니다(위 등록 안내서 참조).

법적 고지 이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분쟁은 변호사 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상담 1800-5455, 분쟁조정 제도)를 이용하세요.